[{(개시사업연도에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×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)－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}÷개시사업 연도의 월 수×12]×3 \* 배당소득×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÷(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§86의2①에 따른 배당가능이익×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)